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6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영호 · 김종민 · 권칠승
고민정 · 임호선 · 박상혁
조정식 · 김준혁 · 박은정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

16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정하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9조를”을 “제9조(제33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9조제33호를 위반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 ----- ----- ----- ----- ----- ----- ----- ----- ----- -----.
1. ~ 32. (생 략) <u><신 설></u>	1. ~ 32. (현행과 같음) 33. 「 <u>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서 <u>확성기·음향기기·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u>

제16조(벌칙) ① <u>제9조를 위반하여</u>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송출함으로써 학생에게 정신적으로</u> <u>위해를 가하는 행위.</u> <u>이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인 지역으로</u> <u>한정하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u> <u>외한다.</u> 제16조(벌칙) ① <u>제9조(제33호는 제외한다)를</u>----- ----- -----.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9조제33호를 위반하여</u> <u>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u> <u>가하는 행위를 한 자</u> 4. (현행과 같음)
--	---